

	<h2 style="margin: 0;">기취득 교양과목 학점인정규칙</h2>		규정번호	3-3-5
			제정일자	1996.03.01
	개정일자	2020.03.01		
	개정번호	Ver.7	총페이지	2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학칙 제31조의2에 의하여 본 대학에 편·입학하기 이전에 본 대학 또는 타 대학 등에서 취득한 교양과목 학점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학점인정 대상자) ① 본 대학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자, 전문학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 취득 후 입학한 자 <개정 2020.03.01.>
 ② 국내·외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자 또는 병역법에 따라 교육·훈련과정 중에 학점을 취득한 자

제3조(학점인정 범위) ① 전문학사과정의 경우 기취득 교양과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인정한다.

1. 본 대학의 교육과정에 개설된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대체될 수 있는 교과목인 경우 12 학점 이내에서 기취득 교양과목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 2. 기취득 교양과목의 교과목별 학점수가 본 대학에 개설된 해당 교과목의 학점수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 본 대학에 개설된 교과목의 학점수로 인정한다.
 3. 기취득 교양과목의 학점수가 본 대학 개설 교과목의 학점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.
- ②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재적 중 자퇴한 자, 제적된 자 또는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으로 편입학한 자 등에 대하여 제 1항과 같이 인정한다.

제4조(학점인정 절차) ① 학생은 해당학기의 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교양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서와 학점취득 기관의 성적증명서를 교학처에 제출한다.

- ② 교양과장은 교과목 담당교수와 협의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교학처에 통보한다.
- ③ 학생은 학점인정신청서에 기재된 교과목 담당 교수의 강좌에 수강신청 해야 한다.
- ④ 인정 교과목의 평점은 기취득 평점과 동일하게 한다.

제5조(규칙의 개정) 이 규칙은 교무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허락을 받아 개정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